

2024년 항공의 날 포상 후보자 공모

2024년 항공의 날(10.30)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한 유공자 및 유공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후보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추천 바랍니다.

2024년 4월 1일

국토교통부 장관

I. 포상개요 및 추천방법

1. 포상시기 및 장소

가. 일시 : 2024. 10. 30(水) 예정(2024년 항공의 날 행사 시 수여)

나. 장소 : 미정

* (주최) 한국항공협회, 대한민국항공회

* (후원)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민국 공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2. 포상종류 및 규모(안)

가. (포상종류)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토교통부장관표창

* 산업훈장 및 산업포장은 단체표창을 수여하지 않음

나. (포상규모)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정부포상*) 등 유관기관 협의 후 추후 결정

* 정부포상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3. 포상후보자 추천

가. 추천기간 : 2024. 4. 19(금)

나. 추천대상

- 1) (개인포상) 항공안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항공산업 관련 분야 사업장 및 단체 근무자, 기타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등

* 정부포상후보자는 항공산업 현장에 귀감이 되는 현장근로자를 적극 발굴·추천

- 2) (단체포상) 항공산업 관련 사업장 및 단체, 기타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업장 및 단체 등

< 포상후보자 세부기준 >

가. (항공산업) 항공여객·물류, 운항·여객서비스, 정비, 제조, 기술개발, 공항운영 및 개발 등 항공산업 발전 종사자

나. (항공안전) 국가항공안전 정책, 항공사고 예방, 안전문화 발전 및 국가항공안전 교류협력 등 항공안전 및 국격 제고에 기여한 자

다. (항공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공항, 생체인식 및 AI 시스템, 소비자 보호, 항공보안 등 항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한자

라. (미래항공교통) 차세대 모빌리티로 떠오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구축 및 레저, 촬영, 화물수송 등 드론개발 공로자

마. (생태계 조성) 전후방 연계 종항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항공물류 운영기반 조성, 항공금융 활성화 등에 기여한 자

바. (기타) 공항건설(가덕도신공항 등), 항공문화 증진, 항공교육·학술 발전, 항공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등 공로자

다. 포상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1) 포상후보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2) 공적조서 작성 시 회사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의 개인 공적 내용을 기재
- 3)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 4)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길 바람
- 5) 공적조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 추천기관(해당기관)이 책임
- 6) 추천기관장은 포상후보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천

II. 포상 및 추천제한 기준

1. 수공기간

- 가. (정부포상) 포상 추천일 기준으로 산업훈장은 15년 이상, 산업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나. (장관표창) 포상 추천일 기준으로 민간인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공무원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단체는 2년 이상 그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

2. 재포상 금지(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 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장관표창 포함)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을 받을 경우는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또한, 퇴직포상을 받은 이후에 다른 분야의 공적으로 정부포상에 후보자로 추천되기 위해서는 퇴직포상을 받았을 때 인정된 공적과 별도로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은 5년 이상의 해당분야의 수공기간이 필요함

3. 포상제한

가.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다.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마.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바.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4. 추천제한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나. 형사처분

- 1)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6)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7)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8)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다.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1)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2)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3)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1)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2)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3)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1)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2)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사.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아.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1)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자. 기타

- 1) 그 외 포상 및 추천제한 기준 등은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의 규정을 따름

Ⅲ. 행정사항

1. 제출서류 : (붙임) 공적조서 작성요령 참고

정부포상, 국토부장관표창	비 고
① 소속회사(기관) 공문	이메일 동시 제출
② 공적조서	이메일 동시 제출
③ 공적요약서	이메일 동시 제출
④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이메일 동시 제출
⑤ 각종 증빙서류(포상경력, 실적증명서 등)	이메일 동시 제출
⑥ 이력서	이메일 동시 제출
⑦ 관련 경력 관련 증명서	이메일 동시 제출

주1) 한국항공협회 홈페이지(www.airtransport.or.kr)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주2) 단체추천 시 이력서 및 관련 경력 관련 증명서는 필요 없음

주3) 공무원은 이력서 제출 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로 제출

2. 서류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24. 4. 19(금), 18시까지 접수 분에 한함

나.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38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3층 315호) 한국항공협회

다. 제출방법 : 한국항공협회 등기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이메일로 제출

* 협회 연락처 : 02-2669-8713, kimpro0128@airtransport.or.kr(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3.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계획

가. 공개내용

1) 정부포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추천 훈격, 주요공적 등을 공개

※ 단, 국가안보·국방·외교, 기타 관련 부처의 비공개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포상을 요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

※ 추천대상자는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함

나.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및 한국항공협회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등에 공개

다. 공개기간 : 공적심의 등 절차를 감안하여 15일 이상 공개

라. 공개결과의 활용

○ E-메일, 전화 등을 통해 추천후보자에 대한 비위사실, 수사진행, 사회적 물의야기 등 의견이 접수된 경우 당사자의 소명 및 관련 기관 조회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

※ 정부포상 추천 이후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의 조사(수사)가 진행될 경우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201-4183)에 즉시 통보

붙임 공적조서 작성요령

□ 공적개요

- (작성항목) (1)~(9), (12)~(20)
- (글씨체) 신명조 12 point, 문단간격 160%
- (매수) 표지포함 4매 이내

□ 작성방법

- (1) : 개인 추천 시 이름, 단체 추천 시 회사명 기재
- (2) : 개인 추천 시 주민등록번호, 단체 추천 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단체 추천 시 (6)~(9) 기재 금지
- (5) : 주소는 개인 추천 시 자택주소, 단체 추천 시 회사주소로 기재
- (7) : 소속은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공식명칭으로 정확히 기재
- (8) : 직위는 상장에 표기되므로 공식 직위명칭으로 정확히 기재
- (10)~(11) : 추천훈격은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 중 기재하고, 추천순위는 훈격 별(정부포상, 장관표창) 자체 순위 기재 가능
- (12) : 공적분야는 항공산업, 항공보안, 조종(운항), 관제, 공항시설(운영), 지상조업, 정비, 연구등으로 작성
- (13) : 근무기간은 추천서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항공산업분야 전체 경력을 합산하여 기재 (※ 석·박사과정 기간도 공적기간에 포함)
- (14) : 공적요지는 6하 원칙에 따라 70자 이내로 작성
- (15)~(17) : 조사자는 추천회사(포상 추천자 해당회사)의 부서장급(포상 담당임원) 이상 기재하고, 조사자의 인 또는 서명 날인
※ 하단의 추천회사명은 추천회사(포상 추천자 해당기관)의 직인이나 인감 날인
- (18) : 주요 경력(회사 근무경력)은 시작일로부터 오름차순으로 연월일을 기재
※ 주요 경력 간의 기간이 연결 안 되는 부분(공백기간)은 공적기간에서 제외
- (19) : 과거 포상기록은 포상훈격과 포상일자의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
※ 장관표창 이상만 기재하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

- (20) : 공적사항은 반드시 2,500자 이상으로 다음사항에 대해 서술식 기재

1. 수공기간

- 항공산업분야 근무기간

2. 주요공적

- 국가발전에 획기적인 공적 기여도
-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도
- 국가제도, 관행 등 획기적 변화에 기여한 정도 등

3. 항공산업 발전 기여도

- 항공발전을 위한 업적 달성 인지도
- 항공여객 등의 만족도 제고 기여도
- 항공안전 및 사고예방 기여도
- 항공산업 및 항공저변 확대 기여도 등
- 항공기술개발 및 항공정보화 발전 기여도 등

4. 사회적 기여도

- 항공분야 종사자에 의한 평판 및 지지도 수준
-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 기타 사회활동을 통한 상생·협력관계 형성 등

5. 기타사항

□ 공적조서 요약서 작성요령

- 글씨체 : 신명조, 12 point, 문단간격 160% (표지 포함 1매 이내)
- 작성방법
 - 공적요지는 추천후보자의 주요공적을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전화번호는 직장, 휴대폰을 구분하여 기재
 - 산재보험관리번호 및 항공운송사업면허번호란 기재 (해당기관)
 - 실무 담당자 정보는 상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 정보 기재

□ 이력서 작성요령

- (민간인) 이력서 해당란 모두 작성 후 공적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
- (공무원)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작성 후 공적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